

의 안 번 호	제 312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소재 ·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양섭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2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이양섭,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최정훈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주요사업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등(안 제5조 ~ 제7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6.
- 협의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재·부품·장비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과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장비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지원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 지원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및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도내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 10.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근거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소재·부품·장비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 추계 결과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10,000,000 천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 : 750,000 천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육성 지원 : 900,000 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11,650,000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육성 지원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재원 조달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11,650,000
자체 수입	소 계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11,650,000
	지방세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11,650,000